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량곡공출제도의 략탈성과 그 후과

김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포악성은 1931년 9.18사변이후, 특히는 1941년 대평양전쟁개시 이후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일제는 강제징병, 강제징용, 강제공출 등으로 조선 인민을 혹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김일정전집》제4권 93폐지)

일제는 1931년 만주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후 우리 나라의 쌀을 략탈하는데 더욱 미쳐날뛰였다. 그것은 대륙에 대한 군사침략을 본격화한것과 관련하여 군량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군수공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공업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도시에서의 쌀수요가 증대되었기때문이다.

일제는 증대된 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32-1936년까지 우리 나라에서 756만 9 837석으로부터 946만 321석의 쌀을 략탈하여갔다. 일제는 만주침략을 시작한 후 1936년까지 해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약 2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략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다.

우리 나라에서의 쌀략탈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1937년 7월이후 절정에 달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총독 미나미 지로가 중일전쟁이 도발된 직후에 《반도는 전시식량생산의 대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해마다 1 000만석이상의 쌀을 략탈할것을 예견한 산미증식계획을 발표한데서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쌀략탈계획을 세운것은 이 시기 일본의 쌀수요가 그 어느때보다도 늘어난것과 관련된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일제는 만주와 중국의 북부지역에 200만명이상의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와 만주 및 중국의 북부지역에 널려있은 일제의 수도 100만명을 넘었다. 이러한 형편은 당시 일제의 식량수요를 전례없이 급격히 증가시킨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에게는 급격히 증가된 식량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없었을뿐아니라 제한된 조건마저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여갔다. 일본에서는 대륙에 침입한 일제침략자들과 군수산업장에 끌려나온 농민들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원래 부족하였던 농촌로력이 더욱더 부족하게 되였다.

일제는 급속히 증대된 전시량곡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악명높은 량곡공출제도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량곡공출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로서 1939년 9월 22일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 령을 공포하고 자본금 500만원으로 독점적인 량곡략탈회사인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를 설 립하였으며 같은해 12월 27일에는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발포하였다.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서는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의 기본업무를 량곡의 수집과 배급 으로 규정하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수집을 보장할 목적으로 식민지강권을 발동하여 1. 조선에서 실시할 량곡의 총수집량-총공출량은 조선총독부가 정하며 정하여진 총공출량은 각 도에 할당된다는것, 2. 각 도에 할당된 공출량은 다시 각 군에 할당되며 그것은 다시 각 면과 각 리, 동에 할당된다는것, 3. 량곡공출은 군농회가 주동이 되여 강요하되 그 구체적집행은 군 및 면관리,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것, 4. 군농회가 공출로 수집한 량곡은 조선미곡시 장주식회사와 13개 도 쌀시장주식회사가 인수하여 찧은 다음 절대부분을 일본에 보내고 나머지 극소량을 부. 군. 도 량곡배급조합에 넘겨주어 배급에 충당한다는것 등을 정하였다.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령과 조선미곡배급조정령 그리고 이 법령들에 기초하여 조선총 독부가 내놓은 량곡략탈정책의 산물인 량곡공출제도는 기아공출제도, 살인공출제도였다.

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량곡공출제도는 류례없는 략탈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일제의 량곡공출제도의 략탈성은 첫째로, 량곡공출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저히 견딜수 없는 파쑈적노예농업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는데 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량곡을 한알이라도 더 많이 략탈하기 위한 량곡공출제도의 효력을 발휘하자면 량곡략탈원천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량곡공출을 강요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주로 지주들을 통하여 농민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농촌수탈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량곡공출을 강요하면서부터 일제는 농민경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경작계획의 작성, 농작물의 배치, 봄갈이, 김매기, 가을걷이 등 농업생산 전과정에 파쑈적폭력체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직접 감시, 통제하였다.이리하여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농업은 일제의 폭력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책농업》으로 그 면모가 변하였다.

일제는 538만석의 쌀과 626만석의 잡곡을 증산할것을 예견한 산미증식6개년계획을 세우고 폭력으로 우리 농민들을 이에 총동원시키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당시 우리 나라 농촌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농업정책으로 하여 인력, 축력, 비료, 농기구, 식량 등이 극히 부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제가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획책한 결과 농민들에게는 심한 전시 노예로동만이 강요되였다. 일제는 량곡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녀자, 로인에 이르기까 지 농촌로력을 량곡략탈을 위한 여러가지 공사에 마구 내몰았다.

일제는 봄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 탈곡에 이르기까지 기간과 책임량을 엄격히 설정하고 군농회, 면사무소관리배들을 경작지에 직접 파견하여 그 과정전반을 엄격히 감시하게 하였으며 경찰까지 이에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 우리 농민들은 지주들과 일제로부터 직접적인 감시와 박해를 더욱 많이 받으면서 《국책농업》의 노예로 더욱더 혹심하게 착취당하였다.

일제는 1940년 산미증식6개년계획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1917년의 조선수리조합령을 개정하여 수리조합련합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이 계획수행의 어용단체로 전환시켰다. 일제는 식민지폭력기구들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관개공사, 저수지공사, 동뚝공사 등에 마구 끌어내고 알선인부, 《보국대》까지 동원하였다.

일제는 1942년 12월 8일 조선농지개발영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치하였다. 조선농지개발영단이란 명칭자체에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악질적인 농업파괴단이였다.

일제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립한 이후 도, 군, 면관리들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우리 농민들을 각종 형식의 토지개발공사와 수리공사에 더욱 포악무도한 방법으로 마구 징발 하였으며 비용을 자부담시키면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일제가 강요한 파쑈적노예로동으로 말미암아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었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구래의연한 원시적농업으로 농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량곡공출제도의 략탈성은 둘째로, 량곡공출이 여러가지 부대적략탈 및 착취와 밀접히 결합되여 강행되였다는데 있다.

일제가 농민들에게 공출량곡을 포장할 가마니와 새끼를 자부담시킴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공출량곡 그자체 부담보다도 포장용기부담이 더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다.

특히 일제는 공출량곡가마니포장규칙에서 반드시 기계새끼를 쓸것을 요구하였는데이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새끼꼬는기계를 가진자는 몇명의 지주들뿐이였기때문에 농민들은 지주들로부터 새끼를 비싸게 구입하는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저들이 경영하는 새끼공장에서 생산한 새끼를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아 막대한 폭리를 얻었다.

일제는 공출량곡을 자체로 운반하게 하는 규정을 통하여서도 우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공출량곡을 정미소까지 초기에는 자동차를 리용하였으나 후에는 여러가지 구실을 대가며 그 운반까지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

일제의 량곡공출제도의 략탈성은 셋째로, 량곡공출이 량곡소비통제와 밀접히 결합되여 강행되였다는데 있다.

량곡소비통제는 량곡공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식생활통제조치였다.

악명높은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서는 조선량곡의 대규모적략탈 즉 량곡공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량곡조절, 량곡배급을 강제실시할것을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의 주되는 업무의하나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량곡공출량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미곡을 최대한도로 략탈하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량곡증산을 강요하는 한편 생산된 량곡이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소비되는것을 온갖 방법을 다하여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1943년 8월에 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이 령에서 쌀, 보리, 밀, 콩 등은 물론 감자류, 알곡류, 알곡가공품(빵 기타)까지 모든것을 오직 《〈국가〉가 관리하고 사고 판다.》고 규정하였다. 이 령에 따라 새로 조선식량영단이라는 량곡수탈기구를 내오게 하였다.

조선식량영단은 우리 나라에서 쌀소비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독점한 략탈적관영기업이였다.

식량영단은 강제공출로 빼앗아낸 쌀을 모두 집중하여 장악하였고 그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는것을 도맡아 하였다. 지어 우리 나라에서의 량곡배급까지 독점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량곡매매에 종사한자들은 거의다 일본인들이였으며 량곡배급기 구들은 아래기구까지 모조리 일제에게 장악되고있었다.

량곡배급을 독점한 일제는 우리 농민들로부터 빼앗아낸 공출량곡의 절대부분을 일본 본토, 만주, 중국 등 여러 지역들에 보내고 얼마 되지 않은 극소수 부분으로 배급제를 실 시하였다.

일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하루 량곡배급정량을 2홉 3작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규정뿐이고 사실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배급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만주의 썩은 잡곡을 먹이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 제는 미쯔이물산주식회사와 도요구니제분주식회사를 고정량곡수입업자로 지정하고 중앙배급조합을 조직하여 해마다 300만~500만석의 만주 잡곡과 콩깨묵을 수입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썩은 만주 좁쌀이나 쿙깨묵과 같은 먹을수 없는것을 2흡 3작이하로 배급하면서도 일본인들에게는 순전한 백미를 그것도 풍족하게 배급하였다. 뿐 만아니라 일제는 저들이 장악관리한 량곡배급기관과 결탁하여 뒤문으로 량곡부정거래를 감행하는것을 완전히 방임하였을뿐아니라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쌀을 요구대 로 먹을수 있게 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량곡배급제도뿐만아니라 그 소비통제의 다른 한 형태인 절 미운동이라는것도 강요하였다.

일제가 강요한 절미운동이란 썩은 잡곡이나 콩깨묵으로 이루어진 그렇게도 적은 량 곡배급량에서 다시 여유량곡을 조성하여 빼앗아내기 위한 운동이였다. 일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미장려회를 조직하여 대용식, 혼식 등을 강요하였다.

대용식이란 량곡대신에 다른것을 먹으라는것이였으며 혼식이란 썩은 잡곡이나 콩깨묵에 다른것을 섞어 먹으라는것이였다.

이것은 참으로 일제와 같은 악랄한 제국주의만이 감행할수 있는 포악한 행위였다.

일제가 강요한 량곡공출제도와 량곡배급제도, 절미운동 등은 우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극도로 저락시켰다.

그리하여 1942년 한해동안에 공화국 북반부지역에서만 하여도 경지면적이 25만 3 000정보나 감소되였으며 이에 따라 알곡수확고도 40만t이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제는 량곡공출을 더욱 심하게 강요하면서 해마다 1 000만석이상의 량곡을 강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말기에 이르 러 참혹한 기근지대로 변하게 되였다.

일제강점말기 아시아에서 주요곡창지대의 하나였던 우리 나라가 얼마나 식량기근으로 하여 허덕이였는가 하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산과 들이 하얗게 변한 사실을 통하여 서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일제는 강점전기간 우리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량곡을 대량적으로 략 탈함으로써 민족경제의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다.